

2018년

# 달라지는 행정제도



# - 목 차 -

1. 일반행정분야	1
2. 산업·경제분야	6
3. 문화·체육·관광분야	7
4. 농어업·축산·산림분야	8
5. 보건·복지·여성분야	17
6. 환경분야	22
7. 도시·교통·건설분야	24
8. 재난안전분야	29

# 1 일반행정분야

제 목	총 전 및 신 규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앙 및 도 투자심사 대상금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앙) 시도 200억원 이상, 시군 100억원 이상</li> <li>- (도) 시도 40억~200억원, 시군 40~100억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정기 심사 연 4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접수) 1차 1월 1일, 2차 3월 31일, 3차 6월 15일, 4차 8월 31일까지</li> <li>- (위원회) 1차 2월 28일, 2차 5월 31일, 3차 8월 15일, 4차 10월 31일까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앙 및 도 투자심사 대상금액 기준 상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앙) 시도 <b>300억원</b> 이상, 시군 <b>200억원</b> 이상</li> <li>- (도) 시도 <b>60억~300억원</b>, 시군 <b>60~200억원</b></li> <li>※ 확정 : '17. 12. 15일 이후</li> </ul> </li> <li>• 정기 심사 연 <b>3회</b>로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접수) 1차 1월 31일, 2차 4월 30일, 3차 8월 31일까지</li> <li>- (위원회) 1차 3월 31일, 2차 6월 30일, 3차 10월 31일까지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재정법 제37조,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 및 4조 (’18.1.1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</li> <li>- 조정 절차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	행정심판법 제43조의2 (’18.5.1.)	기획조정실 (행정심판 담당관)

제 목	총 전 및 신 규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지역개발 채권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,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 : 50%감면</li> <li>-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(자동차 신규·이전등록, 그 밖의 허가 및 등록, 각종계약의 체결)</li> <li>- 5,000만원 이상 비영업용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</li> <li>- &lt;추가&gt;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(2018.01.01.~2018.12.31.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동)</li> <li>- (좌동)</li> <li>- (좌동)</li> <li>- <u>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 (추가)</u>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 결정</li> <li>-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및 지원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	행정심판법 제18조의2 (‘18.11.1.)	기획조정실 (행정심판 담당관)

제 목	총 전 및 신 규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도지사에게 5년마다 균형인사계획 수립 의무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</li> <li>-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 행안부 제출 의무화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(‘18. 1. 예정)	자치행정국 (인사과)
전보 필수보직기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보 필수보직기간 : 1년 6월 * 사회복지, 감사, 법무 등 업무 : 2년</li> <li>실국내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미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 구분없이 전보 필수보직기간 : <b>2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국 내 전보시에도 필수보직기간 : <b>2년(원칙)</b></li> <li>※ (예외) 실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별도로 운영 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(‘18. 1. 예정)	자치행정국 (인사과)
승진임용제한 가산 기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품·향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가산(3개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품·향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 가산 기간 확대(가산기간 : 3개월 → <b>6개월</b>) * 견책(6월), 감봉(12월), 정직·강등(18월)</li> </ul>	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 (‘18. 1. 예정)	자치행정국 (인사과)
거주여권제도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이주신고자,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,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주여권 발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17. 12. 21.부터 거주여권 발급이 중단되고 일반여권으로 통합발급 ※ 기존 거주여권 발급자는 영주권 포기 없이 재외국민 일반여권 발급 가능</li> </ul>	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(‘17.12.21.)	자치행정국 (언제나 민원실)
납세자 권리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세자보호관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례로 정하여 임의 배치</li> <li>- 고충민원처리, 세무상담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</li> <li>- 현행업무 + 납세보호관련 업무* 추가(시행령 및 조례)</li> <li>* 기한연장·징수유예·체납처분유예 결정 등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(‘18.1.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
제 목	총 전 및 신 규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지방세특례 (지역아동센터)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지역아동센터’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공부방 등)에 대해 감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득세·재산세 100% 감면</li> <li>- 일몰기한 : ‘20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(‘18.1.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(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하향 5천만원 ⇒ 3천만원</li> </ul>	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 제1항 ※ 2017. 12. 8. 국회 본회의 의결 (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	자치행정국 (세원관리과)
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	< 신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술적·역사적 압류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은 압류재산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</li> <li>- 부동산이 아닌 예술적·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은 전문성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<sup>1)</sup>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필요</li> <li>- 국세징수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 규정 존재</li> </ul> </li> </ul>	「지방세징수법」 제71조의2 ※ 2017. 12. 8. 국회 본회의 의결 (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	자치행정국 (세원관리과)
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, 조사사유 등을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(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, 조사사유 등을 15일 전까지 통지)</li> </ul>	「지방세기본법」 제83조 제1항 ※ 2017. 12. 8. 국회 본회의 의결 (2018.1.1. 시행)	자치행정국 (세원관리과)

제 목	총 전 및 신 규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가족수당 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양가족(직계비속 등) 연령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 및 배우자의 <b>20세</b> 미만의 직계비속</li> <li><b>20세</b>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li> <li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<b>20세</b> 미만의 형제자매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양가족(직계비속 등) 연령 기준 조정 : <b>20세</b> → <b>19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 및 배우자의 <b>19세</b> 미만의 직계비속</li> <li><b>19세</b>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li> <li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<b>19세</b> 미만의 형제자매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‘18.1.1.)	자치행정국 (회계과)
재정자금 통합관리·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금관리 주관 : 세정과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</li> <li>유휴자금 운용</li> <li>자금배정</li> <li>세입(징수)종합계획 수립</li> <li>금고 관리·감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금관리 주관 변경 : 세정과장 → <b>통합지출관</b>(회계과장)</li> </ul> <p><b>&lt; 자금관리 사무 &gt;</b>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right: 10px;">       ①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       ② 유휴자금 운용(통합계정관리)        ③ 자금배정*     </div> <div style="margin-right: 10px;">→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">       ④ 세입(징수)종합계획 수립        ⑤ 금고 관리·감독     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 정 과      회 계 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 정 과</p> <p>* &lt;자금배정&gt; 일 2회 → <b>지급결의 즉시 배정</b></p>	지방회계법 제45조,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61조 (‘18.1.1.)	자치행정국 (회계과)

## 2

## 산업 · 경제분야

제 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일자리안정자금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</li> <li>- 요건 :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자</li> <li>- 지원 : 노동자 인건비 지원(1인당/월 13만원 지급) &amp; 사회보험료 경감(1인당/월 △12만원)</li> </ul> </li> </ul>	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합동 (‘18.1.02.)	경제실 (일자리경제정책과)
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,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선발인원은 2018년 1월 중 공고예정</li> <li>- (일하는 청년 연금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대상 : 도내 거주,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만18~34세 청년근로자(주36시간 이상 근로),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</li> <li>◦ 지원금액 : 10년간 매월 개인별 매칭 금액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개인:도=1:1 매칭, 개인은 10만원, 20만원, 30만원 중 선택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- (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대상 : 도내 거주, 도내 중소제조기업 만18~34세 청년근로자(주36시간 이상 근로),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</li> <li>- 지원금액 : 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</li> </ul> </li> <li>- (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대상 : 도내 거주,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만18~34세 청년근로자(주36시간 이상 근로),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</li> <li>- 지원금액 : 1년간 80만원~120만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동일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(‘17.7.26.)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(‘16.1.1.)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(‘17.3.13.)	경제실 (일자리경제정책과)



### 3

## 문화 · 체육 · 관광분야

제 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수어통역 도우미 배치	〈신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청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</li> <li>- '18년 2월부터,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</li> </ul>	도 방침 (2018.2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개요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에게 '문화누리카드' 발급 지원</li> <li>•(사용처) 문화예술·여행·체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금 인상 : 1인당 연간 6만원 → <b>7만원</b></li> <li>• 사용처 확대 : 기존 경기관람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</li> </ul>	문화체육관광부 지침 (2018.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경기도문화영향 평가 도입	〈신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요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·평가 제도 도입</li> <li>-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문화적 요소 증대 기대</li> </ul>	경기도문화영향평가 조례 ('17.12. 20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및 시행	〈신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내 지역서점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시행</li> <li>- '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' 심의를 통한 인증</li> <li>1) 인증서 교부 및 경기도지사 인증 현판 부착</li> <li>2) 31개 시·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구매</li> <li>3) 홍보, 경영 컨설팅, 교육, 시설개선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</li> </ul>	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'17.6.13 개정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)

## 4

## 농어업·축산·산림분야

제 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청탁금지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물비 상한액 5만원</li> <li>•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·재료의 50%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•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,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	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(’18. 2월 예정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
어린이 과일간식 공급	<신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이동 과일간식 공급 (도 사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량 : 38,000여명</li> <li>- 사업기간 : 2018. 3월~ 11월, 주 2회</li> <li>- 지원단가 : 1,600원 /150g (1인 1회 기준)</li> </ul> </li> <li>•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 (국비 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량 : 54,000여명</li> <li>- 사업기간 : 2018. 5월~12월, 주 1회</li> <li>- 지원단가 : 2,000원/150g (1인 1회 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 (2018. 3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육묘업 등록	<신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육묘업의 등록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</li> <li>-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(16시간)을 이수</li> </ul> </li> </ul>	종자산업법 제37조의2 (’17.12.28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논 타작물 재배지원 (쌀 생산조정제)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논 타작물 재배전환 농업인에 ha당 평균 3,400천원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량 : 5,199ha</li> <li>- 사업비 : 17,677백만원(국 14,141, 도 1,061, 시군 2,475)</li> <li>* 부담비율 : 국비 80%, 도비 6%, 시군 14%</li> </ul> </li> </ul>	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지침 (’18.1월 예정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쌀소득보전고정 직불금	● 지급시기 : 11월	● 지급시기 : 9월	쌀·밭·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밭농업직불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급시기 : 11월</li> <li>● 지급단가 : 45만원/ha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급시기 : 9월</li> <li>● 지급단가 : 50만원/ha</li> </ul>	쌀·밭·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조건불리지역 직불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급시기 : 11월</li> <li>● 지급단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지 55만원/ha, 초지 30만원/ha</li> </ul> </li> <li>● 마을공동기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공동기금 20%이상 의무적립</li> <li>- 사용범위 : 마을 활성화, 공익적 기능증진을 활동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급시기 : 9월</li> <li>● 지급단가 : 농지 60만원/ha, 초지 35만원/ha</li> <li>● 마을공동기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공동기금 자율적립 (기존 적립기금 기금소진 시까지 사용가능)</li> <li>- 사용범위 확대 : 문화비, 인건비, 공과금 납부 등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높임</li> </ul> </li> </ul>	쌀·밭·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친환경농업 직불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급단가(천원/ha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 : 유기 600, 무농약 400</li> <li>- 밭 : 유기 1,200, 무농약 1,000</li> <li>- 유기지속 : 밭 600, 논 300</li> <li>※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필지는 추가 지원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급단가(천원/ha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 : 유기 700, 무농약 500</li> <li>- 밭 : (과수) 유기 1,400, 무농약 1,200 (채소·특작·기타) 유기 1,300, 무농약 1,100</li> <li>- 유기지속직불 : 논 350, 밭(과수) 700 (채소·특작·기타) 650</li> <li>※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필지 : 유기직불금의 50%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(2017.12.12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사업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양식수산물재해보험(송어) 사업지역(8개 시·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원 영월·정선·춘천·평창</li> <li>- 경북 구미·상주</li> <li>- 충북 보은·충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양식수산물재해보험(송어) 사업지역 확대(9개 시·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동)</li> <li>- (추가) <b>경기 가평</b></li> </ul> </li> </ul>	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 (’17. 9.1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법시설물이 시·군·구 전 양식 어장의 10%이상 차지하는 수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법시설물(면허지 외 시설, 초과시설)이 있는 시·군·구 단위의 수면</li> </ul> </li> </ul>	어장이용개발계획 시행지침개정(’18. 1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제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연안통발 그물코는 22mm이상 사용이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낙지를 포획할 경우, 통발 그물 입구 깔대기의 둘레 140mm이하 사용시 그물코 18mm이상 사용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단서 조항 삭제로, 연안통발로 낙지를 포획하는 경우 에도 22mm이상의 그물코 사용</li> </ul>	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(’17.12. 3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불법어업 위반 적발로 허가취소 시 최대 1년간 재허가 제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제한 :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, 허가외 어업, 타인 지배, 어로한계선 위반</li> <li>- 5~6월 제한 : 조업 자제선 위반,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, 제한 조건 위반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불법어업 위반 적발로 허가취소 시 재허가 제한을 최대 <b>2년</b>으로 2배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제한 :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, 허가외 어업, 타인지배, 어로한계선 위반</li> <li>- 10월~1년 제한 : 조업자제선 위반, 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, 제한조건 위반 등</li> </ul> </li> </ul>	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(’17.12. 3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 시 교육이수 의무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신설</li> <li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수강</li> </ul>	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('17.12.3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성분 허용 기준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</li> <li>4.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소금 : 16% 이상</li> <li>나. 염소이온 : 16% 이상</li> <li>다. 나트륨 : 5%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 기준 추가</li> <li>4.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소금 : 10%~13%</li> <li>나. 염소이온 : 15%~17%</li> <li>다. 나트륨 : 4%~6%</li> <li>라. 칼슘 : 0.1%~0.6%이하</li> <li>마. 인 : 1.5%~4%이하</li> <li>바. 차아염소산 : 0.25ppm~4.0ppm이하</li> </ul> </li> </ul>	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사용기준 제4조('17. 9.22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어선안전 관련 기준 및 처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선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자 : 과태료 10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선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<b>상향 및 신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향)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자 <u>과태료 300만원</u></li> <li>- 신설) 무선설비 미작동자,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, 신고 후 재설치 등 조치하지 않은 자 : 과태료 300만원</li> <li>- 신설) 어선만재흡수선 표시에 따른 과적·과승 항행행위 금지 위반 : 과태료 30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어선법 일부개정 ('17.10.3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어선중개업 제도 신규 도입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선중개업 제도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행령)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및 과징금 부과기준·절차, 등</li> <li>- 시행규칙) 어선거래시스템의 정보이용,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, 어선중개업 등록신청·교육·지도감독 등</li> </ul> </li> </ul>	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('17. 6.28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지역 : 8km이상 떨어진 연육교가 없는 도서</li> <li>- 도내(4개소) : 안산(풍도, 육도), 화성(국화도, 입파도)</li> <li>지급액 : 어가당 55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지역 : 전(全) 도서</li> <li>- 도내(5개소) : 안산(풍도, 육도), 화성(국화도, 입파도, <b>제부도</b>)</li> <li>지급액 : 어가당 <b>60만원</b></li> </ul>	'1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지침 ('18. 1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의사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성분 : 7종</li> <li>- 마취제 : Isoeugenol, Tricaines</li> <li>- 호르몬제 : Gonadotrophin</li> <li>- 항생제 : 독사이클린, 에리스로이신, 옥시테트라사이클린, 스피라마이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의사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성분 : <b>11종(항생제 4종 추가)</b></li> <li>- 마취제 : Isoeugenol, Tricaines</li> <li>- 호르몬제 : Gonadotrophin</li> <li>- 항생제 : 독사이클린, 에리스로이신, 옥시테트라사이클린, 스피라마이신, <u>이목시실린, 임피실린, 겐타마이신, 네오마이신</u></li> </ul>	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, 제3조('18. 5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축사시설현대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</li> <li>- 보조10%, 용자70%, 자담20%</li> <li>※ 단, 가금류 및 방역시설보조 30%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 축종 제한(가금류만 보조)</li> <li>- 보조 30%, 용자 50%, 자담 20%</li> <li>※ 가금류도 2018년까지 보조 지원</li> </ul>	농식품부 행정예고 <축산경영과-3969(2017.6.30.)> ( '18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깨끗한 축산농장 조성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깨끗한 축산농장 조성(농식품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)</li> <li>- 축사 내·외부 환경기준(악취, 축분처리, 정리정돈 등) 평가후 지정(농식품부)</li> <li>※ 미지정자 2020년 이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 제한</li> </ul>	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'18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보급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'18년부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</li> </ul>	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'18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액비살포비 지원액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액비살포비 차등지원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등급 : 25만원/ha</li> <li>- B등급 : 20만원/ha</li> <li>- C등급 : 15만원/ha</li> </ul> </li> <li>※ 액비유통센터 평가(농식품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액비살포비 차등지원액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등급 : 30만원/ha(증액 5만원)</li> <li>- B등급 : 20만원/ha</li> <li>- C등급 : 10만원/ha(감액 △5만원)</li> </ul> </li> <li>※ 액비유통센터 평가(농식품부)</li> </ul>	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'18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</li> </ul>	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(‘18.4.25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 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</li> </ul>	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(‘18.4.25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,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	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(‘18.4.25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·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</li> </ul>	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 (‘18.4.25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·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,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가 가축 : 소, 돼지 제외</li> <li>- 시설기준 조정· 일부시설 설치 생략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말·당나귀·사슴은 10마리 이상, 양은 50마리 이상, 토끼는 100마리 이상, 닭·오리·칠면조·거위·메추리·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</li> </ul> </li> <li>- 차량은 길이 7.3미터, 폭 2.3미터 이상,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</li> </ul> </li> </ul>	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라목 (‘17.11.17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달걀의 세척 및 보존·유통기준 신설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℃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℃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·유통</li> </ul> </li> </ul>	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(‘17.11.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• 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함	•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<b>산란일자로</b> 개정	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(‘17.11.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<신 규>	•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℃이하 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	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(‘17.11.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, 방법, 절차 구체화	<신 규>	•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,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	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2 (‘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물 유기 30→50→100만원</li> <li>• 동물운송방법 10→20→40만원</li> <li>• 동물등록 경고→20→40만원</li> <li>• 개 안전조치 5→7→10만원</li> <li>• 배설물수거 5→7→10만원</li> <li>• &lt;신설&gt;</li> <li>• 윤리위원회미심의30→50→100만원</li> <li>• 개선명령미이행30→50→100만원</li> <li>• 자료제출요구 10→20→40만원</li> <li>• 출입 등 거부 10→20→4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물 유기 100→200→300만원</li> <li>• 동물운송방법 50→100→200만원</li> <li>• 동물등록 20→40→60만원</li> <li>• 개 안전조치 20→30→50만원</li> <li>• 배설물수거 5→7→10만원</li> <li>• 윤리위원회설치 300-300-300</li> <li>• 윤리위원회미심의 100→200→300만원</li> <li>• 개선명령미이행 100→200→300만원</li> <li>• 자료제출요구 20→40→60만원</li> <li>• 출입 등 거부 20→40→60만원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('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죽이는 행위</li> <li>• 상해를 입히는 행위</li> <li>• 화학적 방법의 상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죽음에 이르는 신체적고통과 상해</li> <li>• 혹한 등 환경(신설)</li> <li>• 강제급여나 상해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(‘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 조항 신설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애인보조건 대여</li> <li>• 체험.교육.촬영 대여(인력과 관리가 있을 경우)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(‘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물장묘업</li> <li>• 동물판매업</li> <li>• 동물수입업</li> <li>• 동물생산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(소형견20마리/중형견10마리/대형견5마리)과 일반생산으로 구분</li> <li>• 동물전시업 · 동물위탁관리업 · 동물미용업 · 동물운송업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('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물생산업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물생산업 허가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, 제41조 ('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	<p>〈신 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묘업제외</li> <li>• 당해년 1회3시간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('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물장묘업자, 동물판매업자, 동물수입업자, 동물생산업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자와 그 종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물장묘업자, 동물판매업자, 동물수입업자, 동물생산업자</li> <li>- 동물전시업,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</li> </ul> </li> </ul>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('18.3.22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입목벌채 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분없이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·채취예정수량조사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벌채와 굴취·채취 시 첨부서류 구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벌채 시 첨부서류 : 벌채예정수량조사서</li> <li>- 임산물 굴취·채취 시 첨부서류 : 굴취·채취예정수량조사서</li> </ul> </li> </ul>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('17.12.11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
입목벌채·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	<p>〈신 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재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입목벌채 등에 대한 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필증(신고수리증) 발급</li> </ul>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('17.12.11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
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변경	<p>〈신 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하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와 계약 후 위탁 운영(시설당 3명 배치)</li> </ul> </li> </ul>	산림복지법 제20조 ('17.3.28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

## 5

## 보건·복지·여성분야

제 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긴급복지지원법	< 항목 일부 변경·추가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</li> <li>- 부소득자의 휴·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</li> <li>-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	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('17.11.3.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7년 대비 약 1.16% 증액, (생계·주거·시설이용·교육지원, 연료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계지원금액 : 1인기준 월 432,900원</li> <li>- 주거지원한도액 : 1~2인 중소도시 월 253,800원</li> <li>-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도액 1인 월 535,900</li> <li>- 교육지원금액 : 초등학생 분기 221,600원</li> <li>- 그 밖의 지원(연료비) : 월 96,000원</li> </ul> </li> </ul>	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('18.1.1.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맞춤형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 1,652,931원, 4인가구 4,467,380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 1,672,105원, 4인가구 4,519,202원)</li> </ul>	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39호 ('18.1.1.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급여 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 이내) 초등학생 학용품비 50,000원</li> </ul>	교육부고시 제2017-216호 ('18.1.1.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준중위소득 20%이상 생계급여수급 청년(만15세~만34세)의 자산형성지원(36개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소득공제 저축(1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월평균 30만원)</li> <li>- 평균 1,500만원 지원(3년 이내 탈수급시)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-6227(2017.9.22)호	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
자활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활참여자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유지형 : 26,320원/일</li> <li>- 사회서비스형 : 35,300원/일</li> <li>- 시장진입형 : 39,010원/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유지형 : 26,320원/일 ➡ 27,110원/일</li> <li>- 사회서비스형 : 35,300원/일 ➡ 38,190원/일</li> <li>- 시장진입형 : 39,010원/일 ➡ 42,210원/일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-8026(2017.12.12.)	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
장애인 일자리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장애인일자리 사업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일자리 : 363천원/월</li> <li>- 일반형일자리 : 1,353천원/월</li> <li>- 시간제일자리 : 676천원/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일자리 : 363천원/월 ➡ 422천원/월</li> <li>- 일반형일자리 : 1,353천원/월 ➡ 1,574천원/월</li> <li>- 시간제일자리 : 676천원/월 ➡ 787천원/월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-8831(2017.11.24.)	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
장애인 기능경기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노동부 지정 34개 직종</li> <li>※ 정규직종(20개), 시범직종(12개),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(2개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<b>도 자체종목 신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노동부 지정 34개 직종</li> <li>- <b>(신설) 도 자체종목(2개)</b></li> <li>※ 기능장애인 욕구조사 및 취업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 (‘18. 3월 예정)	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- 건강보험료 금액의 6.5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- 건강보험료 금액의 7.38%</li> </ul>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(‘18.01.01.)	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
장애인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연금 기초급여 - 206,050원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- 250,000원 지급</li> </ul>	장애인연금법 제6조 (‘18.9.1.)	보건복지국 (장애인 복지과)
의약품 거래대금 지급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 지급 * 6개월 경과 후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 지급</li> </ul>	약사법 제47조 (2017. 12. 23.)	보건복지국 (보건정책과)
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- 6개월~59개월 미만 영유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<b>확대</b> - (종전 연령 포함)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(초등학생)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</li> </ul>	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-4031(‘17.9.14) (‘18.10월)	보건복지국 (감염병 관리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위생용품 관리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생용품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확보</li> <li>• 개인 위생용품까지 관리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이행주·타월, 면봉, 화장지, 1회용 기저귀 등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• 위생용품 수입업 신설로 수입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</li> <li>• 세척제·행굼보조제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</li> </ul>	위생용품 관리법 (‘18.4.19.)	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
품목제조번호 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17.1.1. 이전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번호 표시 유예 (‘17.12.31.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7.01.01. 이전에 보고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</li> </ul> </li> <li>※ 신규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7.01.01. 시행</li> </ul>	식품위생법 제10조 (‘18.01.01.)	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
식품과 축산물 기준·규격 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물 가공품을 “식품의 기준 및 규격”으로 이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물가공품을 일반 가공품과 동일하게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서 “가공”에 관한 사항 삭제</li> <li>- ‘축산물가공품’의 기준·규격을 「식품위생법」으로 이관</li> </ul> </li> <li>※ 고시가 통합되어도 ‘축산물가공품’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의 관리를 받음(법 개정 전까지)</li> </ul>	식품위생법 제7조 (‘18.01.01.)	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
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첨가물 품목명(39개) (소르빈산, L-글루타민산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첨가물 품목명(39개)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명이 표기된 기존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</li> </ul> </li> <li>예) 소르빈산→소브산, L-글루타민산→L-글루탐산 등</li> </ul>	식품첨가물 공전 (‘18.01.01.)	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아동수당 지원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아동수당 지원</li> <li>- 지원대상 : 소득하위 90%이하 만6세 미만 아동</li> <li>- 지원액 : 1인당 월 10만원</li> <li>- 지급시기 : 2018. 9월부터</li> </ul>	아동수당법 제정(예정) (소관위원회 심사중)	여성가족국 (아동청소년과)
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(위생용품지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주관부서) 보건복지부</li> <li>● (신청기관) 시·군 보건소</li> <li>● (지급대상) 기준중위소득40%이하, 의료급여·생계급여 수급·아동복지 시설 이용 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</li> <li>● (지급방식) 현물지급</li> <li>● (지원내용) 6개월분 1개세트, 총 216개(6개월×6일×6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주관부서 : 여성가족부</li> <li>● 신청기관 : 읍·면·동 주민센터</li> <li>● 지급대상 : 중위소득 50%이하,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</li> <li>● 지급방식 : ‘국민행복카드’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</li> <li>● 지원내용 :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,300원 (286원×6일×6개)</li> </ul>	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(‘18년 하반기 예정)	여성가족국 (아동청소년과)

## 6

## 환경분야

제 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시(市)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구 30만 이상의 市('19.12.31.), 그 밖의 市('21.12.31.)</li> <li>작성일 기준 5년마다 재작성</li> </ul> </li> </ul>	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(‘18.5.29.)	환경국 (환경정책과)
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방목적의 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방목적의 사업</li> <li>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·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(추가)</li> </ul> </li> </ul>	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(‘18.5.29.)	환경국 (환경정책과)
노후경유차 운행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내 17개 市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 :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(2.5톤 이상)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차량</li> <li>벌칙 : 200만원이하 과태료</li> </ul> </li> </ul>	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(‘18.1.1)	환경국 (기후대기과)
도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차로를 통한 육안 확인 통행료 감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차 통행료 감면 방식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 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 종료</li> <li>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(‘08.3.28.)	환경국 (기후대기과)

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부과시점 : 2018년 이후('18년 자료를 근거로 '19년 부과)</li> <li>● 부과대상 :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</li> <li>● 부과대상자 : 시장·군수·구청장, 사업장폐기물배출자</li> <li>● 부과권자 : 생활폐기물 ⇒ 시·도 사업장폐기물 ⇒ 한국환경공단</li> <li>● 부과회수 : 년 1회</li> <li>● 부과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(산정기준) 매립·소각시설 반입량 기준, 중량단위(무게)</li> <li>-(요 율) 생활폐기물, 사업장폐기물(가연성/불연성), 건설 폐기물 등 차등세율</li> <li>-(산정지수) 최초년도를 1로 하고,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고시</li> </ul> </li> </ul>	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('16.5.29.)	환경국 (자원순환과)
먼지총량제 시행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'18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 1~3종 중 먼지배출량 0.2톤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</li> <li>- 대상업종 : 발전시설, 일반보일러, 소각시설, 고형연료</li> <li>- 업소별 연간 먼지배출허용총량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	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('18.1.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
사고대비물질 확대	● 사고대비물질 69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확대</li> <li>※ 사고대비물질 :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(急性毒性)·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화학물질</li> </ul>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('18.1.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

## 7

## 도시·교통·건설분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발제한구역내 법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폐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</li> </ul> </li> </ul>	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('18.1.1.)	도시주택실 (지역정책과)
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층수가 2층 이상,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</li> <li>- [별표1]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	건축법 시행령 제32조 ('1712.01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건축물의 분양광고 방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분양광고 방법 개선을 통한 청약자의 불편 해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·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</li> <li>※ 현재 하위법령 개정 중</li> </ul> </li> </ul>	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('18.01.25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시 공동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	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('18.2.10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파트 층간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(관리사무소)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, 제20조의2 ('18.2.10.)	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
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가능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</li> </ul>	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('18.2.10.)	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
회계감사의 감사인 회계감사결과 제출근거 마련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	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('18.11.1)	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
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(국비)로 주차 환경개선사업 시·군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(도비 100억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군 사업공모 또는 수요조사 후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·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주차장법 제21조 ('17.6.3.)	교통국 (교통정책과)
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운영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내버스 서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민 257명 구성(장애인 등 교통약자 포함)</li> <li>도민의 시내버스 서비스 직접 평가 및 개선제안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('17.1.5.)	교통국 (버스정책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버스운전자 양성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: 50세~60세이하 60명</li> <li>• 근거조례 :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</li> <li>• 지원내용 : 대형1종 면허취득 (최대 48만원, 운전적성정밀검사, 버스운전자자격증취득 포함)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지원(100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: <b>만35세이상 만60세미만</b> &lt;2018.1.1. 기준&gt; 상반기 500명, 하반기 500명 예정</li> <li>• 근거조례 :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※ 조례 개정추진 중</li> <li>•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형1종 면허취득비용 80% (최대 48만원, 운전적성 정밀검사, 버스운전 자격증취득 포함)</li> <li>②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(100%)</li> <li>③ 버스업체 연수비용(60%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('18년 상반기)	교통국 (버스정책과)
2층버스 확대 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2개 市 운행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, 안산, 남양주, 화성, 시흥, 파주, 김포, 광주, 하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14개 市로 운행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, 안산, 남양주, 화성, 시흥, 파주, 김포, 광주, 하남, <b>양주, 포천</b></li> </ul> </li> </ul>	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('18년 중)	교통국 (굿모닝버스 추진단)
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개 시·군 20개노선 (파주, 김포, 포천, 시흥, 가평, 오산, 연천, 수원, 군포, 화성, 광명, 고양 운행 중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<b>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~8개노선 추가계획(수요조사 및 노선 공모 통해 선정)</li> </ul> </li> </ul>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('18년 3월 예정)	교통국 (굿모닝버스 추진단)
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(용인, 남양주 등 14개 시·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역버스 운행 노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('18년 상반기)	교통국 (굿모닝버스 추진단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공공형 택시 도입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8개 市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도입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市 선정</li> <li>지원형태 : 국비 50%, 시군비 50%</li> <li>지원금액 : 국비 50백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 ('18년 중)	교통국 (택시정책과)
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사업 : 법령에 따라 20M 이상을 굴착하는 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('18.1.1.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사업 : 법령에 따라 10M~20M를 굴착하는 사업</li> <li>제외대상 : 긴급복구공사</li> </ul> </li> </ul>	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('18.1.1.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실시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</li> </ul>	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('18.1.1.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지하굴착 사전컨설팅 실시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M 미만의 지하굴착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하안전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: 경기도민으로써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람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시책사업 ('18.1.1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道 발주사업에 대하여 ‘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’ 사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 제한</li> <li>- 대금의 적기지급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(‘18년 3월 예정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와 실태조사 제도가 병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,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</li> </ul>	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(‘18. 2. 4.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
## 8

## 재난안전분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층수가 <b>6층 이상</b>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</li> </ul>	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[별표 5] (‘18.1.29.) ※ ‘17.1.26. 공포	재난안전본부 (재난예방과)
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</li> <li>※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를 보유한 관계인은 시행일(‘18.1.29.) 이전까지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 확인</li> <li>☞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3년 1회 연장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(‘18.1.29.) ※ ‘17.1.26. 공포	재난안전본부 (재난예방과)
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립·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세대이상 연립·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</li> </ul> </li> </ul>	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[별표 5] (‘18.1.29.) ※ ‘17.1.26. 공포	재난안전본부 (재난예방과)
기능연속성계획 수립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규모 재난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업무중단 대비, 기관의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,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 핵심기능 분석, 업무승계 / 권한위임</li> <li>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설/통신수단 등 대체시설 확보</li> <li>재난시 인력운영 계획 수립</li> </ul> </li> </ul>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신설 (‘18.1.18.)	안전관리실 (안전기획과)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유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<b>과태료 부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취약시설(음식점 등 19종)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</li> <li><b>‘18.1.1부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</b></li> </ul> </li> <li>※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</li> </ul>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(‘18.1.1.)	재난안전본부 (사회재난과)
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추진</li> <li>시·군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경기도에서 발급</li> <li>경기도 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진화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, 법령에 따른 업무추진</li> <li>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시행(‘18.10.25.)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인정</li> <li>법 시행 이후 지정 기관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</li> </ul> </li> </ul>	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(‘18.10.25.)	재난안전본부 (자연재난과)
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</li> <li>*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</li> <li>경기도에서 확인서 발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진화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, 법령에 따른 업무추진</li> <li>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시행(‘18.10.25.)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<b>불인정</b></li> <li>법 시행 이후 지정 기관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</li> </ul> </li> </ul>	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(‘18.10.25.)	재난안전본부 (자연재난과)